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Cases of Legal terms in Japanese style)

연구자 : 박 영 도
(Park. Young-Do)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현안분석 2001 -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연구자 : 박 영 도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목차 및 찾아보기

I. 法の受容과 法言語	9
II. 우리나라에서의 法言語의 受容	13
III.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17
1. 일본어식 법령용어정비의 필요성	17
2. 일본어식 표기용어 정비사례	19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가감(加減, かげん) ☞ 더하고 빼기, 더하기 빼기(○)	35
● 가건물(假建物, かりたてもの) ☞ 임시건물(→)	35
● 가료(加療, かりよう) ☞ 치료, 고침(→)	35
● 가불(假拂, かりばらい) ☞ 임시지급(→)	36
● 가식(假植, かりうえ、かしょく) ☞ 임시심기, 곁심기(→)	36
● 가처분(假處分, かりしょぶん) ☞ 임시처분(→)	36
● 감봉(減俸, げんぼう) ☞ 봉급 깎기(→)	37
● 개간(開墾, かいこん) ☞ 일꾼(○)	37
● 거래선(去來先, きょらいさき) ☞ 거래처(×)	37
● 거류(居留, きょりゅう) ☞ 머물러 삶(○)	38
● 건폐율(建蔽率, けんぺいりつ) ☞ 대지 건물 비율(→)	38
● 검사역(検査役, けんさやく) ☞ 검사인, 검사원(×)	38
● 검시(檢視, けんし) ☞ 시체 검사, 검시(檢屍)(×)	39
● 견본(見本, みほん) ☞ 본(보기)(→)	39
● 견습(見習, みならい) ☞ 수습(×)	39
● 견양(見様, みよう) ☞ 서식, 보기, 본(보기)(×)	40
● 견적(見積, みつもり) ☞ 추산(推算), 어림셈(→)	40

● 견적서(見積書, みつもりしょ)	☞ 추산서(→)	40
● 견학(見學, けんがく)	☞ 보고배우기(○)	41
● 결석계(缺席届, けっせきとどけ)	☞ 결석 신고(서)(×)	41
● 결손(缺損, けっそん)	☞ 모자람(→)	41
● 경관(景觀, けいかん)	☞(아름다움) 경치(○)	42
● 경락(競落, せりおとし)	☞ 경매차지(→)	42
● 경품(景品, けいひん)	☞ 덤상품(→)	42
● 경합(競合, せりあい)	☞ 겨룸, 견준(→)	43
● 제출(届出, とどけで, とどけいで)	☞ 신고(申告)(×)	43
● 고수부지(高水敷地, 一しきち)	☞ 둔치(마당), 강터(×)	43
● 고지(告知, こくち)	☞ 알림(→)	44
● 곤로(焔爐, こんろ)	☞ 풍로, 화로(×)	44
● 공란(空欄, こくらん)	☞ 빈칸(→)	44
● 공람(供覽, きょうらん)	☞ 돌려봄(→)	45
● 공석(空席, こくせき)	☞ 빈자리(○)	45
● 공시(公示, こうじ)	☞ 알림(○)	45
● 공장도가격(工場渡價格, こうしょうわたしかく)	☞ 공장값(→)	46
● 공제(控除, こうじょ)	☞ 뺄, 뺨(○)	46
● 공중(公衆, こうしゅう)	☞ (일반) 사람들, 일반인(○)	46
● 과세(課税, かぜい)	☞ 세금 매김(○)	47
● 과잉(過剩, かじょう)	☞ 지나침, 초과(→)	47
● 괘도(掛圖, かけず)	☞ 걸그림(○)	47
● 구독(購讀, こうどく)	☞ 사(서) 읽음(○)	48
● 구인(拘引, こういん)	☞ 끌어감(×)	48
● 구입(購入, こうにゅう)	☞ 사들임, 사들이기(→)	48
● 구좌(口座, こうざ)	☞ 계좌(×)	49
● 금회(今回, こんかい)	☞ 이번(×)	49
● 납기(納期, のうき)	☞ 내는 날(→)	49
● 납입(納入, のうにゅう)	☞ 납부, 냐, 치름(→)	50
● 내역(内譯, うちわけ)	☞ 명세(→)	50

● 노견(路肩, ろかた)	☞ 갓길(×)	50
● 노임(勞賃, ろうちん)	☞ 품삯(×)	51
● 담합(談合, だんごう)	☞ 짬짜미(○)	51
● 답신(答申, とうしん)	☞ 대답(→)	51
● 대기실(待機室, たいきしつ)	☞ 기다림방(○)	52
● 대체(代替, だいがえ, だいかえ)	☞ 바꿈(○)	52
● 대출(貸出, かしだし)	☞ 빌림(○)	53
● 대폭(大幅, おおはば)	☞ 많이, 크게, 넓게(○)	53
● 대합실(待合室, まちあいしつ)	☞ 기다림방(○)	54
● 도료(塗料, とりょう)	☞ 칠(감)(→)	54
● 렌가(煉瓦, れんか)	☞ 벽돌(×)	54
● 마에가리(前借, まえがり)	☞ 미리받기, 당겨받기(×)	55
● 매립(埋立, うめたて)	☞ 메움(→)	55
● 매점(買占, かいしめ)	☞ 사재기(×)	55
● 매점(賣店, ばいてん)	☞ 가게(→)	56
● 매출(賣出, うりだし)	☞ 판매, 팔기(→)	56
● 면식(面識, めんしき)	☞ 안면(○)	56
● 멸실(滅失, めっしつ)	☞ 없어짐(×)	56
● 명기(明記, めいき)	☞ 분명히 기록함(→)	57
● 명도(明渡, あけわたし)	☞ 내(어)줌, 넘겨줌, 비워줌(→)	57
● 미불(未拂, みはらい)	☞ 미지급(×)	57
● 반입(搬入, はんにゅう)	☞ 실어옴, 실어들임(→)	58
● 발매(發賣, はつばい)	☞ 팔기(→)	59
● 별책(別冊, べっさつ)	☞ 딸림책(○)	59
● 병과(併科, へいか)	☞ 아울러 매김(→)	60
● 부지(敷地, しきち)	☞ 대지(→)	60
● 비목(費目, ひもく)	☞ 비용 명세(○)	61
● 사료(飼料, しりゅう)	☞ 먹이(○)	61
● 삭도(索道, さくどう)	☞ 밧줄, 하늘찾길(×)	61
● 상신(上申, もうしあげ)	☞ 여쭙, 알림(→)	62

- 선불(先拂, さきばらい) ⇨ 선지급(→) 62
- 선착장(船着場, ふなつきば) ⇨ 나루(터)(→) 62
- 선하증권(船荷證券, ふなにしゅうけん) ⇨ 배짐증권(○) 63
- 세대(世帯, 세たい) ⇨ 가구, 집(○) 63
- 세대주(世帯主, 세たい네시) ⇨ 가구주(x) 63
- 소하물(小荷物, こにもつ) ⇨ 잔짐(→) 64
- 송달(送達, そうたつ) ⇨ 보냄, 띄움(→) 64
- 수령(受領, じゅりょう) ⇨ 받음(○) 64
- 수속(手續, てつつき) ⇨ 절차, 순서(→) 65
- 수입선(輸入先, ゆにゅうさき) ⇨ 수입처, 수입국(x) 65
- 수취(受取, うけとり) ⇨ 수령, 받음(→) 65
- 수취인(受取人, うけとりにいん) ⇨ 받는 이(→) 66
- 수하물(手荷物, てにもつ) ⇨ 손짐(→) 66
- 승강장(昇降場, のりおりば) ⇨ 타는 곳(→) 66
- 신립(申立, もうしたて) ⇨ 아뢰, 신청(x) 67
- 실인(實印, じついん) ⇨ 도장, 인장(→) 67
- 압수(押収, おうしゅう) ⇨ 거둬감(→) 67
- 양식(様式, ようしき) ⇨ 서식(→) 68
- 언도(言渡, いいわたし) ⇨ 선고(→) 68
- 역할(役割, やくわり) ⇨ 소임, 구실, 할 일(→) 68
- 염료(染料, せんりょう) ⇨ 물감(→) 69
- 엽연초(葉煙草, はたばこ) ⇨ 잎담배(x) 69
- 오지(奥地, おくち) ⇨ 두메(산골)(→) 69
- 월부(月賦, げっふ) ⇨ 달빚기(→) 70
- 월부금(月賦金, げっふきん) ⇨ 달돈(→) 70
- 유희지(遊休地, ゆうきゅうち) ⇨ 노는땅(→) 70
- 입간판(立看板, たてかんばん) ⇨ 세움 간판(○) 71
- 입하(入荷, にゅうか) ⇨ 들어옴, 들여옴(→) 71
- 잔고(殘高, ざんだか) ⇨ 잔액, 나머지(→) 71
- 저인망(底引網, そこびきあみ) ⇨ 쓰레 그물(→) 72

- 적조(赤潮, あかしお) ㉠ 붉은 조류(×) 72
- 전도(前渡, まえわたし) ㉠ 선지급(→) 72
- 절취(切取, きりとり) ㉠ 자름, 자르기(→) 73
- 지분(持分, もちぶん) ㉠ 몫(→) 73
- 추월(追越, おいこし) ㉠ 앞지르기(→) 74
- 출산(出産, しゅつさん) ㉠ 해산(→) 74
- 출하(出荷, しゅつか) ㉠ 실어내기(→) 74
- 투망(投網, とあみ) ㉠ 던짐 그물, 썰이(→) 75
- 하물(荷物, にもつ) ㉠ 짐(→) 75
- 하주(荷主, にねし) ㉠ 짐 입자, 화주(貨主)(→) 75
- 할증료(割増料, わりましりゅう) ㉠ 웃돈, 추가금(→) 76
- 행선지(行先地, ゆきさき) ㉠ 가는 곳(→) 76
- 회람(回覧, かいらん) ㉠ 돌려보기(→) 76
- 후불(後拂, あとばらい) ㉠ 후지급(→) 77

I. 法の 受容과 法言語

법사회학에 있어서 법의 수용이란 “이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문화변용과정의 일환¹⁾”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일환』이라는 말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법은 종교, 정치, 예술, 학문 등과 아울러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또한 모든 문화는 스스로 고유한 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의 법이 이질적인 법과 접촉하여 야기되는 변용과정을 전체적으로 법변용과정이라고 부르며 법의 수용은 그 『일환』으로서, 즉 법변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전형적인 사례이나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수용이란 외래법의 수용에 의한 국가적인 법의 변용과정이 된다. 자국을 무대로 하여 자국의 법질서전체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외래의 법에 의하여 변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두개의 이질적인 법이 접촉하고, 대립·대결하고 상호 영향을 받아 외래법이 침투하여 고유의 법에 편입된다. 이리하여 법의 수용이란 정적인 수용이 아니라 매우 동태적인 현상이며 그 동태적인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법의 수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①고대법의 부활형과 ②동시대의 외국법을 수입하는 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은 어느것도 다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의식적인 수용라는 점에서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 ③先住民이 아닌 토지에의 이민이나 식민지에 의한 법의 이식도 있으며, 이는 처음에는 무의식에서 시작한 법의 이식이 결국 전문적 법률가에 의한 모국법의 의식적·자각적 이식으로 전환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④강제로 법의 수용이 행해지는 형이 있다. 이는 국가나 민족의 합병이나 식민지화에 수반하여 발생한다.²⁾

1) 『受容이란 말은 영어로는 Reception, 독일어로는 Rezeption이란 용어인데, 한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의 법을 받아들여 자기의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 受容의 문제는 法學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文化의 수용이론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 광범하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종래 法學에서는 이 말을 繼受라는 일본식 번역어로 사용하여 왔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근년에는 受容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崔鍾庫, 歐美法受容과 韓國法文化, 사상과 정책(1989 가을호), 171면.

2) 각각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면 ①의 고대법의 부활의 전형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세말기로 부터 근세에 걸쳐 獨逸에 있어서 로마法の 포괄적인 수용이다. ②의 수입례로

외래법의 수용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외과수술에 의하여 인체에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의 거부반응이나 주는 측과 받는 측과의 사이에 『조직적합성』과 같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생사와 관련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이 때 법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부문에 외래법을 받아들이는가(포괄적 수용인가 부분적인 개별적인 부문의 수용인가, 후자의 경우라면 어느 부문인가), 수용모델로서 어떠한 법을 선택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토착』과 『외래』라는 두가지의 법을 가교하는 매개작업이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것은 전문적 법률가이며, 그 임무는 이질적인 문화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외래법을 고유의 문화적 토양에 정착시키는 매우 미묘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수용되는 법이 이질적일수록 도입된 법은 일반국민과의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합을 가져올 수 없다. 그 결과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병리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도 수용되는 법이 이질적이면 일수록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은 도입된 법규범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법학에 소양있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密敎的인 學問을 성립시킨다. 법률의 난해함과 이에 수반하는 법률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이라는 수용후유증은 법률용어라는 언어학적인 문제의 커다란 하나의 원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이며 난해한 법률용어는 대개의 경우 번역에 의하여 생겨난다. 번역은 외래법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구체적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래법의 번역문제는 법의 수용과정의 하나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³⁾ 특히 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법률용어의 번역은 매우 곤란한 문제를

서는 明治時代 日本에서의 서양법의 수입이나 1927년 이후 터키에서 스위스민법전등의 수용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외에 최근에는 독립을 달성한 신흥아프리카제국이 과거의 종주국인 유럽국가의 法을 새로이 수입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③의 이식의 사례는 北美 및 南美國家의 경우이며 미국법에의 영국법의 이식을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 ④의 강제적인 도입의 예로서는 프랑스 第1帝制時代에 행해진 프랑스에 병합된 지역의 나폴레옹법전의 적용이나 식민지화된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지역등에서 英佛 등의 국가의 법이 다소라도 강제적인 수용을 받은 곳이다. 이중 ③의 移植型이 외래법과의 접촉에 의한 법의 변용과정이라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의 受容類型 가운데 ①의 부활형에 속하는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법 및 법학은 자연과학의 경우와 달리 가시성이 적은 추상적인 학문이며, 법은 이미 지적인 것처럼 문화현상의 일부이며 그 사회에서 문화의 전체적인 구조연관 가운데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즉 법제도는 그 사회에서 표상이나 감정, 행동규범의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법적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즉 법적인 언어와 문화적인 전체구조와는 대위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나 이질적인 사회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법전 또는 법체계를 수입하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종래부터 존재한 단어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용어의 『번역』이란 확실히 무로 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법률상의 신조어는 개념적·추상적인 것이 되고, 구체성과 명료성을 포기하여 되어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주로 중국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한자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법률적인 언어의 창조도 말할 것도 없이 한학에 소양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한자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이나 그곳에는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

의 수용문제에 관해서는 근래에는 獨逸法の 『학문화』과정으로 파악되어 법의 實質(실체법)의 변화가 아닌 널리 전유럽적인 규모로 발생한 『法の 方法의 轉換』이라는 카다란 현상의 일면으로서 파악하는 방식이 강하다. 또한 이 고찰방식에 의하면 로마법의 수용은 獨逸文化와 고전고대문화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연관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고찰방식에 입각하면 수용한 독일사회의 『거부반응』은 예컨대 ④의 植民地 등의 강제적인 도입사례에 비교하면 훨씬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逸에서도 법이 일반인의 생활로 부터 멀어지는 사실과 法曹法(법률가의 법)과 民衆法이라는 법의 이중구조의 성립이 지적되어 『독일법정신은 수용에 의하여 그 창조력을 박탈당해 버렸으며,……법은 이미 민중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실정법의 정립은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 그리고 實定法學은 관료적 전문가의 수중에 파악되는 秘密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法으로 부터의 소외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예증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로마법적 법률용어의 직수입)』이었다. 자세한 것은 Paul Kirchhof, 『Deutsche Sprache』,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Heidelberg 1987, S.800f 참조.

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⁴⁾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 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도 법이 국민 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⁵⁾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와 『일반국민의 법으로 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
- 4) 日本은 徳川時代부터 제한된 창구를 통하여 蘭學을 접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학술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明治時代이후 부터였다. 일본은 서양문물흡수의 일환으로 서양법을 수입, 번역하였으며 그 첫번째 모델은 프랑스법이었다. 일본은 유명한 난학자집안 출신인 箕作麟祥을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 관람단의 일원으로 파견하였다. 그가 1868년 일본으로 돌아오자 받은 과제가 프랑스형법의 번역이었다. 형법에 이어 그는 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헌법 등을 차례로 번역하고 그 전체를 『프랑스 법률서』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에서 六法典書의 효시였다. 江藤新平은 이를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일본법전으로 하려 하였으며, 일본이 법전편찬을 서두르게 된 데에는 일본법의 완비가 서양과의 불평등조약개정 of 전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箕作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여도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 많은 곤란에 접하였다. 한편 江平이 하야한 후 법전편찬작업을 추진하게 된 大木喬任은 프랑스인 법률고문을 초빙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하여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을 완성하고 1879년 민법편찬국을 개설하여 1885년 민법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민법초안은 후일 대폭 수정하여 공포되었으나, 이같이 제정된 日本法이 식민통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실시되어 오늘의 우리 法文化에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서양법수용과 그 법률용어의 형성에 관한 것은 林大·碧海純一(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5 참조.
- 5) 이 점과 관련하여 最近의 日本에서의 논의에 관한 것으로는 星野英一 外, 『法律の現代語化をめぐって』, 『ジュリスト』 第994號, 1992.2.1., 10~45面 ; 森脇勝, 『民事基本法の現代語化作業』, 『NBL』 第536號, 1994.1. 25~27面 등 참조.
- 6) 우리나라에서의 西洋法の 受容에 관한 것은 崔鍾庫, 韓國에서의 西洋法の 受容과 變

II. 우리나라에서의 法言語의 受容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법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 원인으로는 ①법은 국민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통치수단에 불과하다는 儒敎的 傳統思想下的 법의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점, ②서구에서 발전된 개인주의·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법제를 계수한 우리 現行法制가 전통사상을 탈피하지 못한 현실사회와 거리가 있다는 점, ③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信賴度가 희박하다는 점, ④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不信과 物質萬能主義의 풍조가 만연되어 법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⑤多元的인 산업사회에서 외래의 사조와 문화의 영향으로 올바른 가치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⁷⁾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법률의 내용과 용어, 표현방법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알 수 없도록 한다면 법률은 그 적용의 적정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은 법적 생활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국민들의 법생활화의 습성을 이루기도 어렵다.⁸⁾

우리의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容, 法學(서울대) 제33권2호, 1992, 126~141면 ; 同,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3 등 참조.

7) 高昌鉉, 市民生活과 法律, 東亞法學(동아대) 제3호, 1986, 433~446면.

8) 참고로 본원이 1994년도에 전국의 20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國民法意識調查研究에서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서 전체응답자의 93%(1059명)가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나 직업 등에 있어서 法條文이나 法律用語에 관심이 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법령문이나 용어의 난해함을 긍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법생활에 법률의 난해함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분석은 韓國法制研究院, 94 國民法意識調查研究, 1994, 91~93면 참조.

II. 우리나라에서의 法言語의 受容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⁹⁾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¹⁰⁾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성은 법령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¹¹⁾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9) 한상범, 한국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敎育科學社 1994 참조.

10) 『일본사람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이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한 일본의 법개념을 송두리째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도 아닌 法學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 문제성의 정도가 더욱 높다. ……법학은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오든 사람의 行爲를 규율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필요성과 요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 배중대, 『우리 법학의 나아갈 길 -형법학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237~238면.

11) 曹圭昌, 韓國民法과 獨逸民法의 關係 -우리 민법전의 난해성을 중심으로-, 韓獨法學 제4호, 1983, 57~68면.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 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¹²⁾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한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꾸준히 일반국민에 대한 우리 법제의 이해도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에도 이 작업은 정부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법령용어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법령용어의 위치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식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작업추진체계와 그 성과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2) 윤철홍, 한국민법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3호, 1990, 195면 이하.

II. 우리나라에서의 法言語의 受容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1. 일본어식 법령용어정비의 필요성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이후 일제는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1910.8, 칙령 제324호)』을 제정하여 일본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勅令』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사항은 조선총독부의 명령(制令)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령의 제·개정에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天皇의 勅裁를 받아야 하며 임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이를 즉시 발할 수 있으나 후에 勅裁를 받도록 하였다.¹³⁾ 이에 따라 制令 제1호 『조선에 있어서법령의효력에관한건((1919.10.8)』에서 ①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본의 칙령, ②칙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일본법률 및 조선총독부에서 발한 명령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제 통치 36년간 우리나라는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¹⁴⁾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부터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기 까지 미군정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제식민지법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시세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일제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일제법령의 폐지를 선언하는 미군정법령 제11호 『日帝法規의 一部改正廢棄의 建』을 1945년 11월 9일 공포하였다.¹⁵⁾ 이로써 미군정의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일제법령의 효력문제는 남아

13) 제령은 총독부의 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總督府 總務局企劃室에서 이를 심의하고 총독의 자문기관인 中樞院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天皇의 勅裁를 받아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총독부 총무국기획실은 제령등 법안의 입안·심의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적용까지 하였다. 張明根, 前掲論文, 120面.

14) 制令은 조선식민지배의 중추적 법형식으로 식민지배기간동안 총 676건이 공포되었는데, 이 중 제령을 改正하는 제령을 제외하면 270건이다. 제령등 입법사항을 정한 법률과 행정명령등 식민지배법체계는 ①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法律과 勅令, ②勅令으로 조선에 시행된 법률, ③규정의 내용상 당연히 조선에 효력이 미친 法律과 勅令, ④합방당시 효력의 존속을 인정한 구한국법령 및 일본국법령, ⑤制令, ⑥조선총독부령, ⑦道令, ⑧道警務部令, ⑨警務總監部令, ⑩島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433~436면.

15) 자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會, 美軍政法令總覽, 131면 참조.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있고 또 폐지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미군정법령 제21호 『法律諸命令의 存續(1945.11.2 공포)』을 제정·공포하였고, 이 군정법령은 『모든 법률 및 조선군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명령·고시·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효력을 가지고 존속한다(동법령 제1조 전단)』라고 규정하였다.¹⁶⁾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정령지통치의 일반적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미군정이 명시적으로 폐한 것을 제외한 일제의 법령은 잠정적으로 해방된 한국지역에 효력이 존속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제로 일본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존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憲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일본법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¹⁷⁾

이와 같이 일본법령은 한일합방(1910년)부터 1960년 초반까지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 사회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정치·경제·교육등 각분야에 일본식 법령용어가 뿌리깊게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광복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의 깊은 뿌리를 청산하는 작업이 계속 되어 왔으나 법령용어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대로 상당부분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미 기술 및 학술용어로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것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쓰이는 전문법령용어 또는 일상생활 공용어중에서 법령에 표기되는 용어들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말로 순화·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는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법령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한

16) 이에 따라 1948년 4월1일에는 군정법령 제181호 『戰時特例에 관한 법령의 폐지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동월 8일에는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法令의 폐지』를 제정 공포하여 陸軍刑法, 海軍刑法, 集會取締令(이상 일본법령), 軍政違反에 대한 犯罪(미군정법령), 造船臨時不穩文書取締令, 造船臨時保安令(조선총독부제령), 保安法(대한제국법령)을 폐지하였다.

17)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의 경우 1958년에, 『상법』은 1962년에, 『형법』은 1953년에 각각 새로 제정하였던 바, 그 동안에 일제하의 법령을 소위 『依用民法·商法』으로 불리우면서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바 있고, 1983년도 부터는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일본식 표현용어를 중심으로 어려운 한자식 용어, 비민주적 용어에 대한 순화·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정비한 일본어식 표기용어의 정비사례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여 소개하여 본다.

2. 일본어식 표기용어 정비사례

일본말은 음으로 읽는 것이 있고(音讀), 뜻으로 읽는 것이 있다(訓讀). 일본사람들이 한자로 적고 그들 말로 읽는 것(訓讀)을 우리는 그대로 옮겨서 읽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령용어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假(かり) : 임시, 거짓, 일시적, 가짜

법령에서 『임시』의 뜻으로 일본식용어인 『가(假)』를 쓰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①가납(假納)→임시납부(형사소송법 §334), ②가도(假道)→임시도로(택지개발촉진법 §10), ③가병(假病)→피병(군형법 §41), ④가수금(假受金)→임시받은 돈(기업예산회계령 §7) 등이 대표적이다.

- 가교(假橋, かりばし) → 임시다리
- 가식(假植, かりうえ) → 임시심기
- 가처분(假處分, かりしょぶん) → 임시처분

○ 看 【みる(訓), かん(音)】 : 보다

『看』의 경우는 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간주(看做)하다’가 일본법령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훈독(訓讀)으로 ‘미나스’ (みなす) : (보다, 가정하다)로 쓰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음으로 바꾸어 음독으로 ‘간주하다’로 쓰기 때문에 적절한 표기가 아니다.

- 간주(看做, みなす) → 보다, 여기다
- 간과(看過, かんか)→ 보아넘김
- 간병(看病, かんびょう)→ 병간호, 병구완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見 【みる(訓), けん(音)】 : 보다, 보살피다

『見』의 경우는 일본에서 ‘みる’로서 대부분 훈독(訓讀)으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모두 한자음으로 읽고(音讀) 표기한다.

- 견본(見本, みほん) → 본, 보기
- 견양(見様, みよう) → 서식, 보기, 본보기
- 견지(見地, けんち) → 관점, 살피는 처지

○ 掲 【かかげる(訓), けい(音)】 : 내걸다, 게양하다, 실다

일본식 법령용어로 『掲』자가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掲記』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기용어인데 법령, 행정분야에서 크게 통용되고 있다.

- 게기(掲記, けいき) → 적어넣다. 규정하다, 실다
- 게양(掲揚, けいよう) → 달다, 올리다

○ 經 【たつ(訓), きょう(音)】 : (기간, 때가)지나다

일본식 법령용어로 たつ(지나다)로 표기된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經하다, 經하여’로 표기되고 있다.

- 經하다 → 거치다
- 經하여 → 거치어

○ 供 【そなえる(訓), くう, ぎょう(音)】 : 바치다, 올리다

일본식 용어로 そなえる(바치다, 제공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에 供한(供え)』, 『……에 供하다(供える)』등이 대표적인 일본식 법령용어에 해당된다. 일본법령에서는 供하여, 承하여, 經하여, 請하여등 한자약어가 많이 쓰인다.

- 供하다 → 제공하다
- 供한 → 제공한

○ 課 【 かする(音) 】 : 부과하다, 매기다, 시키다

일본법령에서 ‘세금 따위를 매겨서 내게 하다’의 뜻으로 ‘課する’라고 표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자음으로 옮겨서 우리 법령에서 ‘課하다’로 쓰이고 있다.

- 課하다 → 매기다
- 課하는 → 매기는

○ 校 【 あぜ(訓), きょう(音) 】 : 바로잡다

校(きょう)는 ‘바로잡을 교’로 쓰이며, 법령에서 ‘交合(きょうでう) (교합)’이란 용어가 종종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 交合 → (원본, 사본등) 대조·확인

○ 基 【 もとい(訓), き(音) 】 : 토대, 기초, 기본

일본법령에서 ‘의거하다, 기인하다’ 등을 표기할 경우 基どく(もとづく)로 쓰인다. 이를 그대로 우리 법령에서 옮겨서 ‘基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 基하다 → 의하다
- 基한 → 따른, 바탕으로 한

○ 賣 【 うる(訓), ばい(音) 】 : 팔다

‘賣る(うる)’로 일본법령에서, 賣上(うりあげ), 賣渡(うりわたす) 등을 그대로 우리 법령에서 옮겨다가 표기한다. 일본에서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음독(音讀)하고 있다.

- 매도(賣渡, うりわたす) → 팔다
- 매상(賣上, うりあげ) → 팔음, 판매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買 【かう(訓), ばい(音)】 : 사다, 구입하다

‘買う(かう)’로 훈독하는 것을 옮겨서 우리는 한자로 읽고 표기한다. 『買上(かいあげ)』이 일본에서는 ‘가이아게’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매상’으로 읽고 표기한다.

- 매수(買受, かいうける) → 사들이다
- 매입(買入, かいいれる) → 사들이다

○ 未 【また(訓), み(音)】 : 아직, 여태까지

‘未だ(まだ)’은 아직, 아직도, 여태까지의 뜻으로 쓰이며, 일본법령에서 음독으로 未納(みのう), 未拂(みはらい)등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밖에 未到來, 未分明, 未完, 未濟, 未畢, 未洽 등 일본식표기 용어가 법령에서 그대로 한자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 미연(未然, みぜん) → 미리 없음
- 미불(未拂, みはらい) → 지급하지 아니한

○ 返 【かえす(訓), へん(音)】 : 돌려주다

일본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返戻(へんれい)(반환), ‘返す(かえす)(되돌리다)를 그대로 한문글자로 옮겨서 우리법령에서 쓰고 있다.

- 반하다(返하다, かえる) → 되돌려주다
- 반송(返送, へんそう) → 사들이다
- 반환(返還, へんかん) → 되돌려줌
- 반신(返信, へんしん) → 답장, 회답

○ 本 【もと(訓), ほん(音)】 : 근본, 바탕, 기초(책)

『本(もと)』은 훈독으로 일본법령에서 근원·바탕·기초·이것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음독(ほん)으로 本旨, 本會議, 本法 등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그 밖에 우리법령에서 ‘本’자를 쓰는 용어들은 本犯, 本條, 本章, 本件, 本權, 本家 등 수없이 많

다. 本犯은 ‘본래의 범인’이 적합하다. 本犯을 ‘이 범인’으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 本家は ‘친정집’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집’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성을 가져 오게 된다. 그러나 ‘本案’의 경우는 ‘이 안건’ 또는 ‘원래의 안건’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쓸 수 있다.

- 본지(本旨,ほんし) → 본래취지
- 본절(本節,ほんふし) → 이 절

○ 拂 【 はらう(訓), ふつ(音) 】 : 지불, 팔아버림

일본법령에서 지불, 셈 등의 뜻으로 拂い(はらい)로 표기하고, 이와 같이 ‘하라이’로 혼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한자로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있다.

- 불입(拂入,はらいこむ) → 납입, 납부
- 불하(拂下,はらいさげる) → 매각

○ 上 【 うえ(訓), じょう(音) 】 : 위

『上』(じょう)로 음독한다. 일본법령에서 표기하고 있는 『上』자와 관련된 용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상단(上端,じょうたん) → 위부분, 위쪽
- 상반신(上半身,じょうはんしん) → 윗몸

○ 手 【 て・た(訓), しゅ(音) 】 : 손, 익숙하다

『手』는 일본말로 訓讀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 또는 어떤 일에 ‘익숙하다’로 표기할 때 쓰인다. 일본법령에서 ‘手續’, ‘手順’ 등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한자음으로 읽고 쓴다.

- 수제(手洗,てあらい) → 손을 씻음
- 수속(手續,てつつき) → 절차
- 수순(手順,てじゅん) → 순서, 절차
- 수제(手製,てせい) → 손으로 만든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乗 【 のせる, のる(訓), じょう(音) 】

『乗』은 버스등 탈것들을 ‘타다’ (のる), ‘태우다’ (のせる)로 일본법령에서 쓰이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 승입(乗入, のりいれる) → 탑승, 타기
- 승합(乗合, のりあい) → 합승, 같이 탑
- 승강(乗降, のりあり) → 타고 내림

○ 示 【 しめす(訓), し(音) 】 : 가리키다, 보다

『示』는 가리키다, 나타내보이다 등으로 또는 모범, 본보기로 쓰인다. 일본법령에서 示範, 示唆, 示方書 등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한자로 옮기어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 시범(示範, しはん) → 본보기
- 시사(示唆, しさ) → 미리 암시하여 알려줌
- 시방서(示方書) → 설명서
- 시지(示指) → 둘째손가락

○ 身 【 み(訓), しん(音) 】 : 몸

신병(身柄)등 우리말에는 이러한 용어가 없고 일본의 ‘미가라’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 신병(身柄, みがら) → 신체, 신분
- 신원(身元, みもと) → 출신
- 신병인수(身柄引受) → 사람 넘겨 받음
- 신상(身上) → 신분

○ 申 【 もうす, さる(訓), しん(音) 】 : 아뢰다

『申』은 훈독으로 일본법령에서 『신립』(申立, もうしたてる)을 ‘모우시다테루’로 쓰이고 있다. 申立을 쓰지 않고 ‘신청’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 신립(申立) → 신청(申請)

○ 役 【 えき(音) 】 : 일, 직무

『役』자와 관련하여 일본식용어로는 다음과 같다. 역할(役割)은 대표적으로 일본식 용어이다.

- 역할(役割, やくわり) → 소입, 구실, 할 일
- 승합(乗合, みきむ) → 합승, 같이 탑
- 역원(役員) → 임원
- 역부족(力不足) → 힘이 모자람, 힘이부침

○ 屋 【 や(訓), あく(音) 】 : 집옥

우리법령에서 옥상(屋上), 옥내(屋内), 옥외(屋外)등의 용어는 일본식 용어에 해당된다.

- 옥호(屋號, やごう) → 상점이름
- 옥외(屋外, おくがい) → 집 밖
- 옥내(屋内, おくはい) → 집 안
- 옥상(屋上, おくじょう) → 지붕위

○ 引 【 ひく, ひける(訓), いん(音) 】 : 당기다

우리법령에서 가격등을 표시할 때 인상(引上), 인하(引下)로 쓰이고 있으나 일본법령에서 훈독으로 引上을 ‘히기아게루’ (ひきあげる)로 표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자음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 인상(引上, ひきあげる) → 올림
- 인수(引受, ひきうげる) → 떠맡음
- 인하(引下, はきさげる) → 낮춤, 내림
- 인취(引取, ひきとる) → 넘겨 받음

○ 一 【 ひと, ひとつ(訓), いち(音) 】 : 하나, 일

일본법령에서 一時に(いちどきに)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등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한자음으로 그대로 옮기어 쓰고 있다.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일시(一時, いちどきに)에 → 한꺼번에
- 일매(一枚, いちまい) → 한장, 한잎
- 일본조(一本釣) → 외출낚시
- 일신상(一身上) → 본인형편
- 일체(一切)의 → 모든, 전부
- 일본(一本) → (나무)한그루
- 일수(一手) → 한쪽손
- 일단(一團) → 한무리
- 일두(一頭) → 한마리
- 일방(一方) → 한쪽
- 일족(一足) → 한쪽발
- 일체(一體) → 한덩어리

○ 立 【 たつ(訓), りつ(音) 】 : 서다(설립)

일본법령에서 立會(たちあい - 다찌아이) 등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 입회(立會) → 참여
- 입회인(立會人, たちあい) → 참석인
- 입목(立木) → 나무, 선나무
- 입장(立場) → 처지, 관점

○ 入 【 いる(訓), にゆう(音) 】 : 들어감

『入』은 일본법령에서 훈독(いる)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入口, 入會등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다.

- 입회(入會, いるあい) → (회)가입
- 입구(入口, いるぐち) → 어귀, 들어가는 문
- 입어(入漁) → 고기잡이
- 입욕(入浴) → 목욕
- 입질(入質) → 질권 설정
- 입정(入廷) → 법정에 들어감

○ 作 【 つくる(訓), さく(音) 】 : 지을작

『作』은 음독으로 사꾸(さく), 훈독으로 스꾸루(つくる)로 표기하며, 일본식 용어로 作物(すくりもの)로 훈독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어 우리법령에서 표기하고 있다. 『作物』은 대표적인 일본식용어이다.

- 작물(作物, つくりもの) → 농작물
- 작출(作出, つくりだす) → 만들다, 생산하다
- 작목(作木) → 농작물
- 작도(作圖) → 제도
- 작물(作物) → 글짓기
- 작업(作業) → 일

○ 殘 【 のにる(訓), ざん(音) 】 : 나머지

『殘』과 관련된 일본식표현용어로, 殘物(のにりもの)등 훈독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음독·훈독 혼용하는 것을 옮겨서 우리법령에서 쓰이는 것도 많이 있다.

- 잔물(殘物, のにりもの) → 남은 물건
- 잔고(殘高, ざんだか) → 남은 돈
- 잔무(殘務) → 남은 일
- 잔여(殘餘) → 나머지
- 잔재(殘在) → 남아 있는
- 잔존(殘存) → 남아 있는

○ 赤 【 あか, あか(訓), 세키(音) 】 : 붉은 빛

『赤』은 훈독으로 아카이(あか)로 일본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赤字(적자 : あかじ - 아까지)를 우리법령에서 한자음으로 그대로 옮기어 ‘적자’ 라고 표기하고 있다.

- 적자(赤字, あかじ) → 손해, 결손
- 적색(赤色, あかいろ) → 붉은색
- 적대(赤帶) → 붉은띠
- 적목(赤木) → 통나무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切 【 きる(訓), せつ(音) 】

『切』자는 일본법령에서 훈독으로 ‘절상’(切上 : きりあげる)를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기어 쓰이고 있다.

- 절상(切上, きりあげる) → (값)올림
- 절하(切下, きりおろす) → (값)내림
- 절엽(切葉) → 잎자름
- 절취(切取) → 잘라 가짐
- 절개(切開) → 찢, 자름
- 절토(切土) → 흙깎기
- 절사(切捨, たねうま) → 끊어 버림

○ 種 【 たね(訓), しゅ(音) 】 : 씨, 심을 종

『種』자는 일본법령에서 주로 음독(音讀)으로 쓰이고 있으나, 용어에 따라서는 훈독(訓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 종파(種播) → 씨뿌리기
- 종묘(種苗) → 씨모
- 종모우(種牡牛) → 씨수소
- 종서(種薯) → 씨감자

○ 晝 【 ひる(訓), ちゅう(音) 】 : 낮주

『晝』자는 일본법령용어로 훈독(ひる - 히루)으로 표기되는 용어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주간』(晝間 : ひるま)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훈독으로 쓰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어 우리법령에서 쓰고 있다.

- 주간(晝間, ひるま) → 낮
- 주침(晝寢, ひるね) → 낮잠
- 주야(晝夜) → 밤낮

○ 支 【 かう(訓), し(音) 】 : 버틸지

『支』자는 일본법령에서 음독(音讀)으로 쓰이며, 대표적인 용어로는 ‘지불’(支拂)을 들 수 있다. 지불은 대표적인 일본식용어(しはらい)로 쓰이나

우리법령에서는 지급(支給)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 지불(支拂, しはらい) → 지급
- 지지(支持, しじ) → 지탱
- 지변(支辨) → 증당, 갚음
- 지장(支障) → 장애

○ 持 【 もつ(訓), じ(音) 】 : 가지다

『持』자는 ‘가지다’의 뜻으로 일본법령에서 もつ(모쓰)로 혼독된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지출(持出, もちだす)을 들 수 있다.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기어 사용하고 있다.

- 지출(持出, もちだす)하다 → 가지고 나가다
- 지입(持入, もちこみ) → 가지고 들어감
- 지분(持分) → 몫
- 지입금(持入金) → 들여온 돈

○ 替 【 かえる, かわる 】 : 바꿈

『替』는 바꿈, 교환의 뜻으로 쓰이며, 일본법령에서 혼독으로 かえる, かわる(가에루, 가와루)로 읽으며 표기는 『替』로 한다.

- 체당(替當) → 대신지급
- 체임(替任) → 교체임용
- 체환(替換) → 교체발행

○ 此 【 これ, この(訓), し(音) 】 : 이 차, 이것

『此』는 대부분 혼독으로 일본에서 이것(これ, この : 고레, 고노)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기어 중국글자로 표기하고 읽는다. 대표적인 용어로 『此後』(こののち - 고노노지)를 들 수 있다.

- 차후(此後, こののち) → 금후, 이후
- 차제(此際, このさい) → 이 기회에
- 차한(此限) → 이것뿐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借 【かりる(訓), しゃ(音)】 : 빌림

『借』는 훈독으로 かりる(가리루)로 읽고, 음독으로 しゃ(샤) 또는 しゃく(샤꾸)로 읽으며, 일본법령에서 훈독, 음독 모두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한자로 표기하고 읽는다. 대표적인 용어로 借入, 借主등을 들 수 있다.

- 차입(借入, かりいれ) → 꿈, 꾸어들임
- 차입금(借入金, かりいれきん) → 꾀돈
- 차가(借家) → 셋집
- 차임(借賃) → 셋돈, 임차료
- 차주(借主) → 빌리는 사람
- 차용물(借用物) → 빌린 물건
- 차재(借財) → 돈꾸기
- 차물(借物) → 빌린 물건

○ 差 【さす(訓), さ(音)】 : 차이, 차등, 나머지

『差』는 주로 일본법령에서 훈독으로 さす(사스)로 발음하고 표기는 중국 글자로 한다. 우리법령에서 일본식용어를 한자로 옮겨 쓰고 있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差入(さしいる), 差出(さしだし)을 들 수 있다.

- 차출(差出) → 뽑아냄
- 차압(差押, さしだし) → 붙잡아 둠
- 차지(差止) → 금지, 정지
- 차인(差引) → 빼냄, 공제
- 차감(差減) → 빼냄

○ 請 【こう, うける(訓), せい, しょう(音)】 : 청하다

『請』은 훈독으로 うけ(우께)로 읽고 표기는 請으로 하고 있다. 우리법령에서 일본법령표기의 훈독으로 쓰이는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대표적인 사례는 請負를 들 수 있다.

- 청부(請負, うけおし) → 도급
- 청부업(請負業, うけおぎょう) → 도급업

○ 追 【 おう(訓), つい(音) 】 : 쫓다

『追』는 훈독으로 오이(おい)로 쓰이고 있으며, 일본법령에서 쓰는 ‘추월’ (오이고시) (追越 : おいこし)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법령에서 쓰이고 있다.

- 추월(追越 おいこし) → 앞지르기
- 추방(追放 おいはなす) → 내쫓다
- 추송(追送) → 추가로 보내다
- 추불(追拂) → 추가지급
- 추인(追認) → 추후인정
- 추후(追後) → 이다음
- 추징(追徴) → 뒷날징수
- 추궁(追窮) → 캐물음

○ 取 【 とる(訓), しゅ(音) 】 : 취하다

『取』는 일본법령에서 훈독으로 ‘도리’ (とり)로 발음되며, 대표적인 용어로 取扱(とりあつかう - 도리아스가우)을 들 수 있다. ‘취급’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 취급(取扱, とりあつかう) → 다루다
- 취(取, とり)하다 → 얻다
- 취합(取合) → 모으다
- 취하(取下) → 철회
- 취입(取入) → 끌어들임
- 취집(取集) → 수집
- 취출(取出) → 꺼냄
- 취식(取食) → 먹음

○ 下 【 した(訓), か(음) 】 : 내림

『下』는 훈독으로 した(시다), おり(오리) 등으로 쓰이며 일본법령에서 下請(したうけ - 시다우께)등 훈독하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

Ⅲ. 日本語式表記 법령용어의 정비

- 하청(下請) → 하도급
- 하강(下降, したうけ) → 짐내림
- 하명(下命) → 명령
- 하달(下達) → 알림
- 하차(下車) → 차에서 내림

○ 何 【なに, なん(訓), か(음)】 : 어떤, 무엇

『何』는 일본용어로서 훈독으로 何等(なんら)로 쓰이는 것을 우리법령에서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

- 하등(何等 なんら) → 아무런, 어떤
- 하인(何人 なにひと) → 누구, 어떤사람
- 하시(何時) → 어느때, 언제
- 하처(何處) → 어디, 어느곳

○ 割 【わる, わり(훈), かつ(음)】 : 가르다

『割』은 일본법령에서 훈독으로 割當(わりあて)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이고 있다.

- 할당(割當, わりあて) → 배정
- 할인(割引, わりびき) → 깎음, 예누리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용어 자료집 가운데 “일본어투 생활용어” 702단어에서 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정한 것이다. ☞(구분란)에 표시한 약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 : 순화대상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가감(加減, かげん) ⇨ 더하고 빼기, 더하기 빼기(○)

【사례】

※ 公務員年金法

第68條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건물(假建物, かりたてもの) ⇨ 임시건물(→)

【사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가료(加療, かりよう) ⇨ 치료, 고침(→)

【사례】

※ 民防衛基本法

第24條 (報償 및 加療) 民防衛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중 또는 教育訓練通知書を 받고 教育訓練중 傷痕을 입은 者와 死亡(傷痕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適用하여 報償 또는 加療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가불(假拂, かりばらい) ⇨ 임시지급(→)

【사례】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10條 (被害者에 대한 假拂金) ①保險加入者등이 自動車の 運行으로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하여는 그 全額을, 그 외의 保險金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을 위한 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請求한 假拂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식(假植, かりうえ、かしょく) ⇨ 임시심기, 걸심기(→)

【사례】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6 조 (행위등의 제한)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 의 가식을 제외한다)

● 가처분(假處分, かりしょぶん) ⇨ 임시처분(→)

【사례】

※ 民事訴訟法

第714條 (假處分の 目的) ①係爭物에 관한 假處分은 現狀의 變更으로 當事者の 權利를 實行하지 못하거나 이를 實行함에 顯著히 困難할 念慮가 있는 때에 한다.

②假處分은 爭議있는 權利關係에 對하여 臨時의 地位를 定하기 爲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處分은 特히 繼續하는 權利關係에 顯著한 損害를 避하거나 急迫한 強暴을 防止하기 爲하여 또는 其他 必要한 理由에 依하여야 한다.

● 감봉(減俸, げんぼう) ⇨ 봉급 깎기(→)

【사례】

※ 勤勞基準法

第30條 (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正当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 개간(開墾, かいこん) ⇨ 일굴(○)

【사례】

※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自然環境保全地域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地域이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 水道法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이나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史蹟·名勝 또는 天然紀念物과 그 保護區域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自然公園法·水道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을 적용한다.

다. 開墾·埋立·浚渫 또는 干拓

● 거래선(去來先, きょらいさき) ⇨ 거래처(×)

【사례】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석유제품의 거래선의 변경 또는 유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거류(居留, きょりゅう) ⇨ 머물러 삶(○)

【사례】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

第2條 (定義) ③이 法에서 “外國人登錄”·“永住權”이라 함은 각 居留國의 外國人登錄 및 居留資格등을 規定한 法令에 의한 登錄 및 居留資格등을 말한다.

● 건폐율(建蔽率, けんぺいりつ) ⇨ 대지 건물 비율(→)

【사례】

※ 建築法

第47條 (建築物의 建蔽率) 垜地面積에 대한 建築面積(垜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比率(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最大限度는 다음과 같다.

1. 都市計劃區域 : 都市計劃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 검사역(檢査役, けんさやく) ⇨ 검사인, 검사원(×)

【사례】

※ 信託法

第64條 (法院의 監督) ②法院은 利害關係人の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信託事務의 處理의 檢査, 檢査役의 選任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검시(檢視, けんし) ⇨ 시체 검사, 검시(檢屍)(×)

【사례】

※ 臓器等移植에관한法律

第20條 (解剖 또는 檢視의 우선) 刑事訴訟法 또는 檢疫法에 의하여 解剖 또는 檢視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解剖 또는 檢視전에 臓器등의 移植을 위한 臓器등의 摘出을 할 수 없다. 다만, 診療를 담당한 醫師가 摘出할 臓器등과 死亡의 원인간에 相關關係가 없고 解剖 또는 檢視를 기다려서는 摘出할 時期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地方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支廳의 檢事, 관할 檢疫所長의 승인과 遺族의 同意를 받아 臓器등을 摘出할 수 있다.

● 견본(見本, みほん) ⇨ 본(보기)(→)

【사례】

※ 酒稅法

第53條 (見本提出要求)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酒類·밀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가 보유하고 있는 酒類·밀술 또는 술덧의 見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견습(見習, みならい) ⇨ 수습(×)

【사례】

※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제 3 조 (검사원의 자격)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관 관련 견습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관의 자격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검사관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실무경력(별표 3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미만인 자 : 1년 이상의 견습경력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견양(見様, みよう) ⇨ 서식, 보기, 본(보기)(×)

【사례】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증지의 발행)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
한 경우에는 증지의 견양을 공고하여야 한다.

- 견적(見積, みつもり) ⇨ 추산(推算), 어림셈(→)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 견적서(見積書, みつもりしょ) ⇨ 추산서(→)

【사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견학(見學, けんがく) ⇨ 보고배우기(○)

【사례】

※ 接境地域支援法

第15條 (社會福祉 및 統一教育 지원) ②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獎勵하기 위하여 接境地域의 見學 및 訪問事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결석계(缺席届, けっせきとどけ) ⇨ 결석 신고(서)(×)

【사례】

※ 國會法

第32條 (請假 및 缺席) ①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國會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請假書 또는 缺席届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議員이 請假書를 제출하여 議長의 許可를 받거나 正當한 사유로 缺席하여 缺席届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國會議員手當등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別活動費에서 그 缺席한 會議日數에 相當하는 金額을 減額한다.

● 결손(缺損, けっそん) ⇨ 모자람(→)

【사례】

※ 肥料管理法

第 8 條 (肥料計定の 設置 및 財政支援) ②政府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그 肥料의 供給으로 인하여 缺損額이 생긴 때에는 이를 政府豫算에서 第1項의 肥料計定에 補填한다. ③第2項의 缺損額은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一般會計 歲計剩餘金으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경관(景觀, けいかん) ⇨(아름다움) 경치(○)

【사례】

※ 都市計画法

第33條 (地區의 지정)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公共의 安寧秩序와 都市機能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地區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1. 景觀地區 : 都市의 景觀을 보호·形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區

- 경락(競落, せりおとし) ⇨ 경매차지(→)

【사례】

※ 住宅賃貸借保護法

第3條의5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賃借權은 賃借住宅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가 行하여진 경우에는 그 賃借住宅의 競落에 의하여 消滅한다. 다만, 保證金이 全額 辨濟되지 아니한 對抗力이 있는 賃借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품(景品, けいひん) ⇨ 덤상품(→)

【사례】

※ 방송법시행령

제60조 (협찬고지) 방송사업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 경합(競合, せりあい) ⇨ 겨룸, 견준(→)

【사례】

※ 地方自治法

第10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계출(届出, とどけで、とどけいで) ⇨ 신고(申告)(×)

【사례】

※ 歸屬財産處理法施行令

第11條 ③前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優先買收願을 届出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買收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한 者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

● 고수부지(高水敷地, 一しきち) ⇨ 둔치(마당), 강터(×)

【사례】

※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78條 (公共施設등의 무료이용) ①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등을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의 場所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國家機關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高水부지·제방·林野 또는 裸地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고지(告知, こくち) ⇨ 알림(→)

【사례】

※ 青少年保護法

第39條 (異議申請) 이 法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は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事由를 갖추어 處分을 한 行政廳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곤로(焔爐, こんろ) ⇨ 풍로, 화로(×)

【사례】

※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제817조 (방화조치) ⑥어선에 스토브, 솥 또는 곤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 이외의 것은 솥 또는 곤로의 측면에서 0.3미터이상 상단에서 0.9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 공란(空欄, こくらん) ⇨ 빈칸(→)

【사례】

※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등초본 작성방법) ③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람(供覽, きょうらん) ⇨ 돌려봄(→)

【사례】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第23條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위반된다고 審議·議決한 約款條項의 目錄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供覽하게 할 수 있다.

● 공석(空席, こくせき) ⇨ 빈자리(○)

【사례】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5 (任員등) ⑤任員이 空席이 된 경우 當然職理事를 제외한 補 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공시(公示, こうじ) ⇨ 알림(○)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공장도가격(工場渡價格、こうしょうわたしかく) ⇨ 공장값(→)

【사례】

※ 관세법시행령

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 공제(控除, こうじょ) ⇨ 댐, 뺌(○)

【사례】

※ 國民年金法

第77條 (年金保險料의 源泉控除納付) ①使用者는 事業場加入者が 부담할 寄與金を 그에게 支給할 매월의 賃金에서 控除하여 이를 公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金에서 寄與金を 控除한 때에는 控除計算書を 작성하여 事業場加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중(公衆, こうしゅう) ⇨ (일반) 사람들, 일반인(○)

【사례】

※ 공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과세(課稅, かぜい) ⇨ 세금 매김(○)

【사례】

※ 國稅基本法

第1條 (目的) 이 법은 國稅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 및 共通的인 事項과 違法 또는 不當한 國稅處分에 대한 不服節次를 規定함으로써 國稅에 관한 法律關係를 確實하게 하고, 課稅의 公正을 圖謀하며, 國民의 納稅義務의 圓滑한 履行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과잉(過剩, かじょう) ⇨ 지나침, 초과(→)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과도(掛圖, かけず) ⇨ 걸그림(○)

【사례】

※ 비밀보호규칙

제28조 (지도, 과도 등의 표지) 지도, 과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구독(購讀, こうどく) ⇨ 사(서) 읽음(○)

【사례】

※ 관보규정

제15조 (관보보급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 구인(拘引, こういん) ⇨ 끌어감(×)

【사례】

※ 刑事訴訟法

第71條 (拘引의 效力) 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拘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內에 釋放하여야 한다.

● 구입(購入, こうにゅう) ⇨ 사들임, 사들이기(→)

【사례】

※ 靑少年保護法

第18條 (구분·隔離등) ②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媒體物은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를 設置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靑少年의 靑少年有害媒體物 구입행위 등을 制止할 수 있는 경우

● 구좌(口座, こうざ) ⇨ 계좌(×)

【사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 (목돈마련저축금액) ③농어민은 제1항의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여러 구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 금회(今回, こんかい) ⇨ 이번(×)

【사례】

※ 우편법시행규칙

제92조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 ②계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계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기의 금회요금표시액

● 납기(納期, のうき) ⇨ 내는 날(→)

【사례】

※ 國稅徵收法

第10條 (納稅告知書の 發付時期) 納稅告知書와 納額通知書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發付하여야 한다.

1. 納付期限이 一定한 경우에는 納稅告知書는 納期開始 5日전, 納額通知書는 納期開始 15日전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납입(納入, のうにゅう) ⇨ 납부, 냄, 치름(→)

【사례】

※ 刑法

第69條 (罰金과 科料) ①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に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以上 3年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以上 30日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 내역(内譯, うちわけ) ⇨ 명세(→)

【사례】

※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第14條 (負擔金の 決定・賦課)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賦課終了時點부터 3月이내에 開發負擔金を 決定・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第9條第3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大規模事業의 일부에 해당되어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費用의 内譯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を 決定・賦課할 수 있다.

● 노건(路肩, ろかた) ⇨ 갓길(×)

【사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 (전도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등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및 노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임(勞賃, ろうちん) ⇨ 품삯(×)

【사례】

※ 電氣工事業法

第34條 (勞賃에 대한 押留의 금지) ①工事業者가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都給金額중 당해 工事의 勤勞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②第1項의 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담합(談合, だんごう) ⇨ 짬짜미(○)

【사례】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第18條 (同一人의 株式所有制限)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同一人이 所有하거나 사실상 支配하는 경우는 同一人이 자기 또는 他人名義로 所有하거나 談合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답신(答申, とうしん) ⇨ 대답(→)

【사례】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제16조 (특정지역계획의 협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월이내에 협의 사항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대기실(待機室, たいきしつ) ⇨ 기다림방(○)

【사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 대체(代替, だいがえ, だいかえ) ⇨ 바꿈(○)

【사례】

※ 海運法

第45條 (船舶確保 등의 지원) ①政府는 海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録을 한 者(이하 “海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金의 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하게 하거나 融資을 우선할 수 있다.

1. 國內港間을 運航하는 船舶의 輸入
2. 船舶施設의 개량 또는 대체
3. 船舶의 補修
4. 計劃造船에 의한 船舶의 建造

②政府는 第1項第1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 낡은 船舶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融資하게 하거나 融資을 우선할 수 있다.

● 대출(貸出, かしだし) ⇨ 빌림(○)

【사례】

※ 銀行法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銀行業”이라 함은 預金の 受入, 有價證券 기타 債務證書의 발행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資金을 貸出하는 것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業을 規則的·組織的으로 영위하는 韓國銀行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
3. “商業金融業務”라 함은 대부분 要求拂預金の 受入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 1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가 預金總額을 고려하여 정하는 最高貸出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年이상 3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4. “長期金融業務”라 함은 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 1年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 社債 기타 債券의 發行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 1年을 초과하는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 대폭(大幅, おおはば) ⇨ 많이, 크게, 넓게(○)

【사례】

※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대합실(待合室, まちあいしつ) ⇨ 기다림방(○)

【사례】

※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

第3條 (적용대상 地下施設)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地下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의 施設을 말한다.

1. 地下驛舎(出入通路·待合室·昇降場 및 취 환乘通路와 이에 附帶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 도료(塗料, とりょう) ⇨ 칠(감)(→)

【사례】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 렌가(煉瓦, れんか) ⇨ 벽돌(×)

【사례】

※ 民法

第280條 (存續期間을 約定한 地上權) ①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 다음 年限보다 短縮하지 못한다.

1. 石造, 石灰造, 煉瓦造 또는 이와 類似한 堅固한 建物이나 樹木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30年

- 마에가리(前借, まえがり) ⇨ 미리받기, 당겨받기(×)

【사례】

※ 勤勞基準法

第28條 (前借金相殺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貸債權과 賃金を 相殺하지 못한다.

- 매립(埋立, うめたて) ⇨ 메움(→)

【사례】

※ 公有水面埋立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埋立”이라 함은 公有水面에 土砂·土石 기타의 물건을 人爲적으로 投入하여 土地를 造成하는 것(干拓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매점(買占, かいしめ) ⇨ 사재기(×)

【사례】

※ 物價安定에관한法律

第7條 (買占賣惜行爲의 금지) 事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物品을 買占하거나 販賣를 기피하는 行爲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物價의 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買占賣惜行爲로 指定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매점(賣店, ばいてん) ⇨ 가게(→)

【사례】

※ 老人福祉法

第25條 (生業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 食料品·事務用品·新聞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이상의 者の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매출(賣出, うりだし) ⇨ 판매, 팔기(→)

【사례】

※ 證券去來法

第2條 (定義) ④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賣出”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

- 면식(面識, めんしき) ⇨ 안면(○)

【사례】

※ 公證人法

第27條 (囑託人の 確認) ①公證인이 證書를 作成하기 爲하여는 囑託人の 姓名을 알고 또한 이와 面識이 있어야 한다.

- 멸실(滅失, めっしつ) ⇨ 없어짐(×)

【사례】

※ 民事訴訟法

第147條 (調書の 證明力) 辯論의 方式에 關한 規定의 遵守는 調書에 依하여서만 證明할 수 있다. 다만, 調書가 滅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기(明記, めいき) ⇨ 분명히 기록함(→)

【사례】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第 5 條 (法律) ②憲法 第53條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會議長이 公布하는 法律의 公布文前文에는 國會議의 議決을 얻은 뜻 및 憲法 第53條 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公布한다는 뜻을 記載하고, 國會議長이 署名한 후 國會議長印을 押捺하고 그 日字를 明記하여야 한다.

- 명도(明渡, あけわたし) ⇨ 내(어)줌, 넘겨줌, 비워줌(→)

【사례】

※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第48條 (區分所有權등의 賣渡請求등)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가 建物を 明渡함에 따라 生活上 現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再建築의 수행에 甚한 影響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그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따라 代金の 支給 또는 提供日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建物の 明渡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 미불(未拂, みはらい) ⇨ 미지급(×)

【사례】

※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1조 (부채의 정리구분) ①이 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부채 : 미불금(미불급여·미불물자대·미불공사대·미불경비)·미지급이자·단기차입금·장기부채중단기상환금·미불외자수수료 및 기타 부채(전수금·연금·수탁공사예납금·보관전보료·제세·제보증금 기타)

● 반입(搬入, はんにゅう) ⇨ 실어옴, 실어들임(→)

【사례】

※ 自然環境保全法

第14條 (國際的滅種危機種의 國際去來등의 規制) ①國際的滅種危機種 (쉽게 識別할 수 있는 부분·派生物·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에 의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 國際的滅種危機種을 이용한 加工品으로서 藥事法에 의한 輸出·入許可를 받은 醫藥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은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的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임을 알면서 이를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 占有, 所有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適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國際的滅種危機種을 國外에서 捕獲·採取·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발매(發賣, はつばい) ⇨ 팔기(→)

【사례】

※ 競輪・競艇法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競輪”이라 함은 자전거競走에 勝者投票券을 發賣하고 勝者投票의 中者에게 還給金を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競艇”이라 함은 모타보트競走에 勝者投票券을 發賣하고 勝者投票的 中者에게 還給金を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勝者投票券”이라 함은 競輪 또는 競艇開催시 勝者를 的中시켜 還給 金を 교부받고자 하는 者의 請求에 의하여 競輪 또는 競艇事業者가 發賣하는 勝者投票方法・選手番號 및 金額등이 기재되어 있는 票券을 말한다.

● 별책(別冊, べっさつ) ⇨ 딸림책(○)

【사례】

※ 不動産登記法

제14조(登記簿의 種類) ②各種의 登記부는 特別市・廣域市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別冊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別책으로 한다. 그러나 登記사건이 過多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別책으로 할 수 있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병과(併科, へいか) ⇨ 아울러 매김(→)

【사례】

※ 刑法

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①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2. 各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の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の 1까지 加重하되 各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併科할 수 있다.
3. 各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の 異種의 刑인 때에는 併科한다.

● 부지(敷地, しきち) ⇨ 대지(→)

【사례】

※ 駐車場法

第19條 (附設駐車場の 設置) ①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は 당해 施設物の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の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 비목(費目, ひもく) ⇨ 비용 명세(○)

【사례】

※ 地方自治法

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 사료(飼料, しりゅう) ⇨ 먹이(○)

【사례】

※ 飼料管理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飼料”라 함은 畜産法에 의한 家畜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物·魚類등(이하 “動物”이라 한다)에 營養이 되거나 그 健康維持 또는 成長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單味飼料·配合飼料 및 補助飼料를 말한다.
2. “單味飼料”라 함은 植物性·動物性 또는 鑛物性物質로서 飼料로 直接 사용되거나 配合飼料의 原料로 사용되는 것으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配合飼料”라 함은 單味飼料·補助飼料등을 適정한 比率로 配合 또는 加工한 것으로서 用途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補助飼料”라 함은 飼料의 品質低下 防止 또는 飼料의 效用을 높이기 위하여 飼料에 添加하는 것으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식도(索道, さくどう) ⇨ 밧줄, 하늘차길(×)

【사례】

※ 索道·軌道法

第3條 (定義) ①이 法에서 “索道事業”이라 함은 空中에 設置한 밧줄에 運搬機를 달아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을 말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상신(上申, もうしあげ) ⇨ 여쭙, 알림(→)

【사례】

※ 赦免法

第15條 ①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의 報告 또는 事件本人의 出願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定한 者에 對한 復權의 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上申의 申請은 刑의 執行終了日 또는 執行의 免除된 日로부터 3年이 經過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 선불(先拂, さきばらい) ⇨ 선지급(→)

【사례】

※ 農漁村整備法

第61條 (地料등의 減額·반환 또는 增額請求) ①農業基盤等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上權·地役權 또는 賃借權의 目的이 되는 土地의 이용이 侵害 當하였을 경우에는 그 土地에 對한 地上權者·地役權者 또는 賃借人은 地料, 地役의 代價 또는 賃貸料의 減額이나 先拂한 地料, 地役의 代價 또는 賃貸料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 선착장(船着場, ふなつきば) ⇨ 나루(터)(→)

【사례】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운항규칙)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도선은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 선하증권(船荷證券, ふなにしゅうけん) ⇨ 뱃짐증권(○)

【사례】

※ 商法

第790條 (運送人の 責任輕減禁止) ②第1項의 規定은 산動物의 運送 및 船荷證券 기타 運送契約을 證明하는 文書의 表面에 甲板積으로 運送할 취지를 기재하여 甲板積으로 행하는 運送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세대(世帯, 세たい) ⇨ 가구, 집(○)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 (급여의 기준 등)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世帯)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 세대주(世帯主, 세たい네시) ⇨ 가구주(×)

【사례】

※ 國民健康保險法

第 8 條 (資格의 변동) 地域加入者가 職場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 職場加入者 또는 그 被扶養者가 地域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地域加入者의 世帯主가 각각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變動日부터 14日 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소하물(小荷物, こにもつ) ⇨ 잔짐(→)

【사례】

※ 遊船및渡船事業法

제32조 (運航約款) ②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도선의 승객·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 운송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송달(送達, そうたつ) ⇨ 보냄, 띄움(→)

【사례】

※ 民法

第113條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表意者が 過失없이 相對方을 알지 못하거나 相對方의 所在를 알지 못하는 境遇에는 意思表示는 民事訴訟法 公示送達의 規定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 수령(受領, じゅりょう) ⇨ 받음(○)

【사례】

※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法律

第12條 (處理情報の 閱覽) ①情報主體는 個人情報화일臺帳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書面으로 本人에 關한 處理情報の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の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 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 수속(手續, てつつき) ⇨ 절차, 순서(→)

【사례】

※ 行政代執行法

第3條 (代執行의 節次) ③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수입선(輸入先, ゆにゅうさき) ⇨ 수입처, 수입국(×)

【사례】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②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취(受取, うけとり) ⇨ 수령, 받음(→)

【사례】

※ 郵便法

第10條 (無能力者の 行爲에 關한 擬制) 郵便物の 發送, 受取 其他 郵便利用에 關하여 無能力者가 郵便官署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能力者가 行한 것으로 본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수취인(受取人, うけとりにいん) ⇨ 받는 이(→)

【사례】

※ 豫算會計法

第64條 (手票發行의 제한) 支出官은 債權者를 受取人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手票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出納公務員,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대하여 資金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하물(手荷物, てにもつ) ⇨ 손짐(→)

【사례】

※ 海運法

第21條 (免許의 取消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事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의 停止(당해 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出港의 停止를 포함한다)를 命하거나 3千萬 원이하의 課徴金を 賦課할 수 있다.

2. 旅客運送事業者가 海洋事故를 당한 旅客이나 手荷物 또는 小荷物에 대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被害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을 하지 아니한 때

- 승강장(昇降場, のりおりば) ⇨ 타는 곳(→)

【사례】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3조 (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0. 정차대 및 승강장

● 신립(申立, もうしたて) ⇨ 아림, 신청(×)

【사례】

※ 租稅犯處罰節次法

第9條 ①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犯則事件의 調査에 依하여 犯則의 心證을 얻은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 沒收 또는 沒取에 該當하는 物品, 追徵金에 相當하는 金額과 書類送達, 押收物件의 運搬 保管에 要하는 費用을 指定한 場所에 納付할 것을 通告하여야 한다. 但 沒收 또는 沒取에 該當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納付의 申立만을 할 것을 通告할 수 있다.

● 실인(實印, じついん) ⇨ 도장, 인장(→)

【사례】

※ 國稅徵收法

第31條 (押留禁止財産) 다음 各號의 財産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

3. 實印 기타 職業에 필요한 印章

● 압수(押收, おうしゅう) ⇨ 거둬감(→)

【사례】

※ 憲法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양식(樣式, ようしき) ⇨ 서식(→)

【사례】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3條 (圃田賣買의 契約) ③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는 圃田賣買에 있어서 標準契約書의 樣式을 정하여 이를 契約書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勸獎할 수 있다.

● 언도(言渡, いいわたし) ⇨ 선고(→)

【사례】

※ 赦免法

第3條 赦免, 減刑과 復權은 左에 列記한 者에 對하여 行한다.

1. 一般赦免은 罪를 犯한 者
2. 特別赦免과 減刑은 刑의 言渡를 받은 者
3. 復權은 刑의 言渡로 因하여 法令의 定한 바에 依한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

● 역할(役割, やくわり) ⇨ 소임, 구실, 할 일(→)

【사례】

※ 男女雇傭平等法

第2條 (基本理念) 勤勞女性은 經濟 및 社會發展에 기여하며 다음 世代의 出産과 養育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는 者이므로 母性을 보호받으면서 性別에 의한 차별없이 그 能力을 職場生活에서 최대한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 염료(染料, せんりょう) ⇨ 물감(→)

【사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4 조 (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 엽연초(葉煙草, はたばこ) ⇨ 잎담배(×)

【사례】

※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第 2 條 (名稱) ①이 法에서 “組合”이라 함은 葉煙草生産協同組合을, “中央會”라 함은 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가 아니면 葉煙草生産協同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의 名稱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 오지(奥地, おくち) ⇨ 두메(산골)(→)

【사례】

※ 奥地開發促進法

第 2 條 (奥地の 범위) 이 法에서 “奥地”라 함은 都市地域으로부터 상당한 距離에 떨어져 있는 地域으로서 交通이 불편하고 住民의 所得水準과 生活水準이 현저히 낮은 地域중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地域을 말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월부(月賦, げっふ) ⇨ 달뚫기(→)

【사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 월부금(月賦金, げっぶきん) ⇨ 달돈(→)

【사례】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만기지급) ①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도래되거나 마지막 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 유희지(遊休地, ゆうきゅうち) ⇨ 노는땅(→)

【사례】

※ 국민투자기금법

제9조 (용지매수를 위한 국민투자채권의 지급) ①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공업단지·도로 또는 중요산업의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나 유희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투자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입간판(立看板, たてかんばん) ⇨ 세움 간판(○)

【사례】

※ 青少年保護法

第20條 (廣告宣傳 제한) ①青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하(入荷, にゅうか) ⇨ 들어옴, 들여옴(→)

【사례】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34條 (去來의 特例)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去來가 어려운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외의 者에게, 市場都賣人の 경우에는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販賣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잔고(殘高, ざんだか) ⇨ 잔액, 나머지(→)

【사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1조 (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저인망(底引網, そこびきあみ) ⇨ 쓰레 그물(→)

【사례】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적조(赤潮, あかしお) ⇨ 붉은 조류(×)

【사례】

※ 農漁業災害對策法

第4條 (補助 및 지원)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漁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異常潮流 또는 赤潮現象으로 인한 水産養殖物의 被害가 있는 경우 :

- 전도(前渡, まえわたし) ⇨ 선지급(→)

【사례】

※ 企業豫算會計法

第19條의2 (資金의 前渡) 糧穀管理特別會計는 糧穀의 買入資金과 糧穀管理를 爲한 操作費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代行機關에 前渡할 수 있다.

- 절취(切取, きりとり) ⇨ 자름, 자르기(→)

【사례】

※ 國民投票法

第56條 (投票通知票交付) ⑦投票通知票와 受領證은 1枚로 印刷하여 100枚 單位로 綴하고 一連番號를 붙이며 投票人에게 교부할 때마다 投票通知票를 切取하여야 한다.

- 지분(持分, もちぶん) ⇨ 몫(→)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채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추월(追越, おいこし) ⇨ 앞지르기(→)

【사례】

※ 海上交通安全法

第17條 (좁은 水路등) ⑤第2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追越船은 좁은 水路등에서 追越당하는 船舶이 追越船을 安全하게 通過시키기 위한 動作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追越할 수 없을 경우에는 汽笛信號를 하여 追越의 意思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追越당하는 船舶은 그 意圖에 同意한 때에는 汽笛信號를 하여 그 意思를 표시하고, 追越船을 安全하게 通過시키기 위한 動作을 취하여야 한다.

- 출산(出産, しゅつさん) ⇨ 해산(→)

【사례】

※ 母子保健法

第1條 (目的) 이 법은 母性の 生命과 健康을 보호하고 健전한 자녀의 出産과 養育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출하(出荷, しゅつか) ⇨ 실어내기(→)

【사례】

※ 農水産物品質管理法

第6條 (品質認證의 有効期間)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効期間은 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 이내에 그 品目の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品目の 特性상 有効期間의 延長이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투망(投網, とあみ) ☞ 던짐 그물, 쟁이(→)

【사례】

※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신고어업)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하물(荷物, にもつ) ☞ 짐(→)

【사례】

※ 檢疫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주(荷主, にねし) ☞ 짐 임자, 화주(貨主)(→)

【사례】

※ 海運法

第32條 (外航貨物運送事業者의 금지행위) ①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者(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非商業的인 이유로 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일본어식 표기 법령용어사례>

- 할증료(割増料, わりましりゅう) ⇨ 웃돈, 추가금(→)

【사례】

※ 도선법시행규칙

제27조 (수역이용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는 도선료 (할증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행선지(行先地, ゆきさき) ⇨ 가는 곳(→)

【사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4조 (터미널기능의 유지 등) ②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운행시각표·운임표와 행선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 회람(回覽, かいらん) ⇨ 둘러보기(→)

【사례】

※ 관보규정시행규칙

제 5 조 (관보비치) ②관보를 비치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관보를 회람할 수 있도록 관보의 배부 및 회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후불(後拂, あとばらい) ⇨ 후지급(→)

【사례】

※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66조 (후불운임 및 요금의 징수요구) ①철도청 심사사무소장(이하 “심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후불계약서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15일까지 전월분의 총액을 심사하여 청장 또는 세입징수관에게 징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수요구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단위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불운임에 대하여는 지방철도청분임세입징수관이 소속간대체분개표를 작성하여 매월 심사사무소장을 거쳐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